투 자 권 유 준 칙

제정 2017.04.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등 등(법 제6조 6항)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④ 임직원등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 제24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271조에 해당하는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관한 사항)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의거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7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별표2>,<별표3>,<별표4>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

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산배분유형)

①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제3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

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4호>의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 임직원등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1]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등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2)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5.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등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

다.

제5장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

제15조(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 등별 위험도를 <별표 4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 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목표 투자 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 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등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장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③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적합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소득 상황, 투자 경험/지식, 위험선호도, 투자 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투자권유를 원하는 고객과 원하지 않는 고객으로 분류하여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투자권유를 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투자권유 희망여부에서 “투자권유희망”과 “정보제공”을 선택하시고 질문내용에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면 당사로부터 적합한 투자권유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제공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회사로부터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등 록 구 분	☐ 신규등록 ☐ 정보변경 ☐ 기존정보와 동일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정보제공 ○정보미제공) ☐ 투자권유를 원하지 아니함

1. 고객의 연령 또는 신용등급	개인	법인
	☐ 19세 이하 ☐ 20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 이상	☐ A 이상 ☐ B 이상 ☐ C 이상 ☐ 기타
2. 자금의 투자가능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5년 미만 ☐ 2년 이상~3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1년 미만	
3. 투자경험 (중복응답가능)	☐ **공 격 형 상품** : ELW, 선물옵션, ELF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 **적극투자형 상품**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비보장형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위험중립형 상품** : 신용도 중간등급 회사채, 원금부분보장형 ELS, 혼합형펀드 등 ☐ **안정추구형 상품** : 금융채, 신용도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안 정 형 상품**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4.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님의 지식수준	☐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높 은 수 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낮 은 수 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5. 전체 금융자산 내 투자자금 비중	☐ 1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20% 이상~30% 미만 ☐ 30% 이상~40% 미만 ☐ 40% 이상	
6. 수익상태	☐ 현재 일정한 수익 발생, 향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익 발생,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익 없음	
7.고객님의	☐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원금손실 감수 수준	□ 투자원금 중 일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8.투자성향 자가진단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추구. 투자자금의 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안 정 형** :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단체)등록번호 _____ 고객명(본인)_____

(인/서명)

투자설명 확인

▣ 투자일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귀 사가 계약기간 동안 거래증권사로부터 일임계좌의 매매, 잔고,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전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문대리인 등록 등의 사유로 투자일임계약서의 내용을 거래증권사, 사무수탁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대리인 계약체결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된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귀 사가 계약기간동안 주문대리인 등록 등의 사유로 투자일임계약서의 내용을 거래증권사, 사무수탁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들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들었습니다.
(동의 □ 거부 □)

투자정보제공 동의 등

운용보고서 수령 방법	□ E-mail ( ) □ 우편
투자일임계약권유문서	□ 투자일임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7조(계약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면자료입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 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인)	관 계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별표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기준

구 분		기준 및 배점					Scoring
연 령		19세이하	20~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5
		□ 2	□ 4	□ 5	□ 4	□ 2	
연 소 득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
		□ 2	□ 3	□ 4	□ 5		
수 입		현수준 유지, 증가	감소, 불안정	연금 등 고정수입			5
		□ 5	□ 4	□ 2			
금융자산대비 투자비중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50% 이하	50% 초과	5
		□ 5	□ 5	□ 4	□ 3	□ 2	
투자경험 상품	□	선물옵션, 원금비보장 ELW, 신용거래				15	15
	□	직접투자, 주식형펀드, 투자일임 등 주식, 부동산				13	
	□	혼합형펀드, 채권 등				12	
	□	금융상품 투자경험 없음				10	
투자목적	□	적극적 매매, 원금초과하는 손실위험 감내				20	20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실현				18	
	□	시장가격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실현				15	
	□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				10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헤지				5	
금융지식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이해				15	15
	□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깊이 이해				13	
	□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맞 부동산 보통 이해				12	
	□	금융상품 지식 전혀 없음				10	
위험손실 (원금기준)		-30% 초과	-30% 이내	-20% 이내	-10% 이내		20
		□ 20	□ 18	□ 15	□ 10		
투자기간		~ 1년	1~2년	2~3년	3~5년	5년~	5
		□ 1	□ 3	□ 3	□ 4	□ 5	
기대수익		시장평균 초과	시장평균 수준	정기금리 수준			5
		□ 5	□ 4	□ 3			
Scoring 계							

<별표 제2호>

투자자 유형분류 및 세부자산배분 유형

투자자 유형	Scoring 결과
공격 투자형	80점 초과
적극 투자형	70점 초과 ~ 80점 이하
안정 추구형	60점 초과 ~ 70점 이하
위험 중립형	50점 초과 ~ 60점 이하
안 정 형	50점 미만

<별표 제3호>

적합성 판단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 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표 제4호>

금융투자상품 등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초고위험
(Speculative Risk)</th><th>고위험
(High risk)</th><th>중위험
(Intermediate Risk)</th><th>저위험
(Low Risk)</th><th>초저위험
(Ultra Low Risk)</th></tr>
<tr><td colspan="2">채 권</td><td colspan="2">투기등급 포함
(BB 이하)</td><td></td><td>회사채
(BBB+~BBB-)</td><td>금융채
회사채
(A-이상)</td><td>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td></tr>
<tr><td rowspan="2">파생
결합
증권</td><td>(ELS,
DLS)</td><td colspan="2">원금비보장형</td><td></td><td>원금
부분보장형</td><td>원금보장형</td><td></td></tr>
<tr><td>ELW</td><td colspan="2">ELW</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주식</td><td colspan="2">부동산</td><td rowspan="2">주 식</td><td rowspan="2">부동산간접투자기구</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 colspan="2">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td></tr>
<tr><td colspan="2">선물옵션</td><td colspan="2">선물옵션</td><td colspan="4"></td></tr>
</table>

<별표 제5호>

장내파생생품 투자권유시 추가 기준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경험</th></tr>
<tr><th>1년 미만</th><th>1년 이상 ~ 3년 미만</th><th>3년 이상</th></tr>
<tr><td>만 65세 이상</td><td>- 파생상품 등 권유불가</td><td>-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td><td>-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td></tr>
<tr><td>만 65세 미만</td><td>-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td><td colspan="2">-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 등</td></tr>
</table>